

경로장애인과

□ 신규시책

- 1. 원주 추모공원 봉안당 증축 51
- 2. 무실 노인종합복지관 신축 53
- 3. 장애인 비급여 보장구 원주시 추가 지원 54
- 4. 장애인활동지원 시 자체 가산수당 지급 55

□ 계속·연례반복 사업

- 5. 노인일자리 사업 56
- 6. 노인돌봄사업 57
- 7. 노인복지시설 지원 58
- 8. 장애인 일자리지원 사업 59
- 9.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60
- 10.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61
- 11. 발달장애인 활동 지원 62

1. 원주추모공원 봉안당 증축

- 2025년 원주추모공원 내 봉안당 시설 만장 예상에 따른 증축 필요
- 장사 정책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,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지속 가능한 장사문화 정착 필요

□ 사업 개요

- 사업기간: 2024. 1.~2026. 12.(3년)
- 총사업비: 5,670백만 원(토지보상비 제외)
- 사업량: 원주시 추모공원 봉안당 신축
 - 연면적 832㎡, 12,000기
- 사업위치: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1800
- 시행근거
 -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및 제13조(공설묘지 등의 설치)

□ 추진 실적

- 2023. 6. 민간전문가 자문 및 봉안당 증축계획 수립
- 2023. 7. 관계부서 의견수렴 및 여주·횡성 토지사용승낙서 징구
- 2023. 7. 지방재정투자심사 제출
- 2023. 9.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
2024년 본예산 요구(건축기획 업무용역 및 실시설계용역비)

□ 추진 계획

- 2023. 10.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
- 2024. 1. 건축기획 업무용역 발주
- 2024. 3. 2025년 장사시설 설치 국도비보조금 신청
- 2024. 5. 기본 및 실시설계 공모
- 2024. 8.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
- 2025. 8. 건축공사 발주

□ 소요 예산

○ 5,670백만 원(국 874, 도 187, 시 4,609)

※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36조(비용의 보조)에 따라 1㎡당 150만원을 기준으로 국비 지원 비율은 70%(105만원/㎡)이며(국:도:시=70:15:15), 추가 소요 비용은 시비 확보

(단위: 백만 원)

구분	총사업비	2024년	2025년	2026년	2027년 이후
계	5,670	260	2,840	2,570	-
국비	874	-	440	434	-
도비	187	-	100	87	-
시비	4,609	260	2,300	2,049	-

※ 기투자: 20.1억 원(해당 부지의 공시지가) 제외

□ 기대 효과

- 안정적인 장사시설 확충을 통해 이용 시민의 편리하고 경제적인 장례 절차 지원
- 무분별한 묘지 설치로 인한 국토 훼손을 예방하고 자연 친화적인 선진 장사문화 정착 도모

2. 무실 노인종합복지관 신축

- 원주시 전역 균형 있는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및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남원주권역 노인복지관 추가 신축

□ 사업 개요

- 사업기간: 2023년 ~ 2026년
- 위 치: 원주시 단계동 1223(이화근린공원 내)
 - 부지면적: 6,000㎡ / 공원
- 총사업비: 100억 원(건축비 / 시비)
- 건축규모: 지하 1층(주차장), 지상 3층(연면적 3,000㎡)
- 시설내용: 사무실, 회의실, 식당, 강당, 프로그램실 등

□ 추진 계획

- 2023. 10.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
- 2023. 10. 지방재정 투자심사
- 2023. 11.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
- 2024. 1. 건축기획,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, 건축공모
- 2025. 3. 공사 착공
- 2026. 5. 공사 준공

□ 소요 예산

- 총사업비: 10,000백만 원

(단위: 백만 원)

구분	총사업비	2024년	2025년	2026년
시비 (계속비)	10,000	500	6,500	3,000

□ 기대 효과

- 남부권역에 노인복지관 설치로 어르신들의 균형 있는 복지혜택 제공

3. 장애인 비급여 보장구 원주시 추가 지원

- 저소득 장애인에게 보장구 구입비 및 수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
- 신체적 기능의 회복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 촉진

□ 사업 개요

- 지원대상: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원주시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자인 등록장애인
- 추진근거: 장애인복지법 제9조
- 지원품목: 7개 품목
 -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, 수동휠체어, 배터리, 욕창방석, 저시력보호안경, 의안
- 지원기준: 보장구 구입·수리 시 의료급여 및 강원도 지원금액 외 1인당 연 최대 100천 원 추가 지원(실비)
- 사업인원: 100명
- 사업비: 10백만 원(100명 × 100,000원)

□ 추진 계획

- 2023. 7.~10.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심의 및 결정
- 2023. 11. 2024년 본예산 편성
- 2024. 1. 사업 추진

□ 소요 예산

- 10백만 원(시비)

(단위: 백만 원)

구분	총사업비	2024년	2025년	2026년	2027년 이후
시비	40	10	10	10	10

□ 기대 효과

- 보장구 구입비 및 수리비 추가 지원으로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
- 보장구를 구입 또는 수리하여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의 회복을 도와 자립생활 지원

4. 장애인활동지원 시 자체 가산수당 지급

- 활동지원사의 근로 의욕 고취 및 삶의 질 향상 도모
-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 서비스 연계 활성화

□ 사업 개요

- 지원근거: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- 지원대상: 보건복지부 가산수당 대상인 최중증 장애인을 제외한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
- 지원금액: 시간당 3,000원, 심야 또는 공휴일은 4,500원의 가산수당을 지급
- 사업량: 중증장애인 35명
- 선정기준: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등급이 7구간 이상인 자

□ 추진 실적

- 2023. 6. 19. 사회보장제도 컨설팅 완료
- 2023. 6. 27.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

□ 추진 계획

- 2023. 8.~10.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심의 및 결정
- 2023. 11. 2024년 본예산 편성
- 2024. 1. 사업 추진

□ 소요 예산

(단위: 백만 원)

구분	총사업비	2024년	2025년	2026년	2027년 이후
시비	2,644	530	609	700	805

□ 기대 효과

- 중증장애인(약35명)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연계 활성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
- 가산수당 지급 대상 활동보조사(약40명)의 임금 향상으로 근로 의욕 고취

5. 노인일자리 사업

- 노인 일자리 제공을 통해 소득 보충, 건강개선 및 사회적 관계 증진 등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

□ 사업 개요

- 사업대상: 만 65세 이상 어르신
- 추진근거: 노인복지법 제23조(노인사회참여 지원)
- 사업내용: 공익형, 사회서비스형, 시장형 일자리 및 취업지원
- 사업유형별 지원조건
 - 공익형: 기초연금 수급자, 월 30시간 이상 근로, 27만 원
 - 사회서비스형: 월 60시간 이내 근로, 71만 원
 - 시장형: 사업단별 근무시간 상이(월평균 48시간), 최저임금
- 소요예산: 23,777백만 원(국 11,553, 도 2,189, 시 9,699, 복권기금 336)
- 수행방법: 수행기관 위탁운영
- 수행기관: 원주시니어클럽,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,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

□ 추진 상황

구분	2021년	2022년	2023년	비고
사업단	39개	40개	39개	
사업량(일자리)	5,469개	5,728개	6,236개	

□ 추진 계획

- 2023. 11. 수행기관 지정신청 접수 및 위탁계약협약
- 2023. 11. 수요처 조사
- 2023. 12. 참여자 모집 공고 및 선발
- 2024. 1. 사업 추진

6. 노인돌봄사업

-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, 노인의 기능·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

□ 사업 개요

[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]

- 사업대상: 만 65세 이상 독거·조손·고령부부 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
- 추진근거: 노인복지법 제27조의2(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)
- 사업내용: 5개 권역별 수행기관 전담사회복지사 및 생활관리사가 대상 어르신에 대한 안전 확인, 사회참여 및 일상생활 등 지원
- 수행기관: 종합복지관 5개소

[독거노인·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]

- 사업대상: 만 65세 이상 독거·조손·고령부부 중 상시 안전 확인을 요하는 가구
- 추진근거: 노인복지법 제27조의2(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)
- 사업내용: 응급상황 대응이 어려운 노인가구에 응급상황 대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장비 설치 및 전담인력(응급요원)의 모니터링
- 수행기관: 원주가톨릭노인복지센터

□ 추진 상황

(기준: 8월 말)

구분		2021년	2022년	2023년
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		2,806명	2,987명	3,332명
응급안전 안심서비스	대상	1,758세대	1,802세대	1,897세대
	응급상황 현장출동	348건	248건	442건

□ 추진 계획

- 2023. 9.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발굴 조사
- 2023. 10. 응급안전안심서비스 500가구 장비 설치
- 2023. 12. 응급안전안심서비스 500가구 장비 설치

7. 노인복지시설 지원

-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노후생활 유도
-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시설 활성화 유도

□ 사업 개요

- 지원대상

(단위: 개소)

합계	양로시설	재가시설	요양시설	노인복지관	경로당	노인교실
545	1	5	64	2	464	9

- 지원근거: 노인복지법 제47조
- 사업비: 12,864백만 원
 - 양로시설 운영비: 943백만 원(도 717, 시 226)
 -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: 500백만 원(시비)
 - 노인생활시설 운영비: 70백만 원(도 35, 시 35)
 - 보장시설 생계급여: 2,600백만 원(국 2,340, 도 182, 시 78)
 - 노인복지관 운영비: 1,958백만 원(시비)
 - 경로당 운영비: 6,726백만 원(국 507, 도 1,883, 시 4,336)
 - 노인교실 운영비: 67백만 원(도 7, 시 60)

□ 추진 계획

- 양로시설 운영비: 종사자(15명) 인건비 및 운영비(입소자 43명), 프로그램 지원
-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(5개소): 인건비, 운영비, 사업비 지원
- 노인생활시설 운영비: 기존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중 등급외자(3명) 지원
- 노인복지관 운영비(2개소): 종사자(29명) 인건비, 운영비, 사업비 지원
- 경로당 운영비 및 냉·난방비: 2,324백만 원 / 464개소
- 경로당 건강관리기 지원(유지보수 포함): 96백만 원 / 40개소
-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: 3,102백만 원
- 경로당 노인건강 및 순회 프로그램(579백만 원) 및 정부양곡 구입비(228백만 원)
- 경로당 사업비(경로당 안전 점검 외 4): 397백만 원
- 노인교실 운영비 및 프로그램(강사비): 67백만 원

8. 장애인 일자리지원 사업

-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
- 근로 연계를 통한 장애인 복지 증진

□ 사업 개요

- 지원근거: 장애인복지법 제21조,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2
- 지원대상: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
- 사업비: 2,649백만 원(국 1,357, 도 291, 시 1,001)
- 주요직무: 일자리 사업별 행정보조 및 복지서비스 제공

□ 추진 상황

- 사업량: 176명(전일제 45, 시간제 18, 복지일자리 70, 안마사파견 16, 요양보호사 보조 12, 중증장애인강원형일자리 15)
- 사업내용: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
- 수행기관
 - 일반형 일자리(전일제, 시간제): 원주시 경로장애인과(직접 운영)
 - 복지일자리, 요양보호사보조: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
 -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: 대한안마사협회 강원지부 위탁운영
 - 중증장애인 강원형일자리: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위탁운영

□ 추진 계획

- 참여자 및 수행기관 모니터링을 통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사업량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
 - ※ 2024년 사업량 184명(전일제 46명, 시간제 19명, 안마사파견 20명, 요양보호사 보조 14명)으로 증원 요청
- 장애 유형별 맞춤형 신규 일자리 보급을 통한 장애인 일자리 확대

9.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

-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을 통한 운영 안정성 확보 및 입소자 및 이용자의 복지 증진 도모

□ 사업 개요

- 지원대상

(단위: 개소)

구 분	거주시설			이용시설				
	생활시설	단기거주시설	공동생활가정	복지관	주간보호소	직업재활시설	생활이동지원센터	수어통역센터
29	6	2	6	2	4	7	1	1

- 지원근거: 장애인복지법 제81조
- 사업비: 20,107백만 원(국 7,388, 도 634, 시 12,085)
 - 거주시설: 12,230백만 원
(생활시설 10,555, 단기거주 1,322, 공동생활 353)
 - 이용시설: 7,877백만 원
(복지관 2,960, 주간보호 1,579, 직업재활 2,676, 생활이동 309, 수어통역 353)

□ 추진 상황

- 장애인복지시설 29개소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
-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

□ 추진 계획

- 분기별 보조금 지원 및 연 1회 이상 지도. 점검

10. 장애인활동지원 사업

-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

□ 사업 개요

- 추진근거: 장애인복지법 제55조(활동지원급여의 지원)
- 사업대상: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
- 사업내용: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그 가족의 부담 경감에 기여
- 제공기관
 - 활동보조: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, 원주지역자활센터, 원주장애인 자립생활센터, (사)강원도장애인부모연대 원주시지부
 - 방문간호, 방문목욕: 원주시 사랑복지재가센터

□ 추진 상황

-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1,040명 바우처 지원
- 활동보조 제공기관 4개소, 방문목욕·간호 제공기관 1개소 관리
- 장애인활동지원(보건복지부)
 - 월 60시간~480시간 지원 / 본인부담금: 무료~187,700원
- 장애인활동보조 추가지원(도사업)
 - 월 20시간~360시간 지원 / 본인부담금 없음
- 장애인활동보조 추가지원(자체사업)
 - 월 10시간~20시간 지원 / 본인부담금 없음
- 장애인활동지원 가산수당(보건복지부)
 - 최종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여 활동지원사의 최종증장애인 기피현상 완화, 활동지원사의 연계를 활성화
 - 시간당 3,000원(심야 22시~06시 4,500원)

□ 추진 계획

- 분기별 예약금 입금 및 연 1회 이상 지도·점검

11. 발달장애인 활동 지원

-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여 개인에 맞는 다양한 재활 및 활동서비스를 제공하여 발달장애인의 자립 및 역량 강화

□ 사업 개요

[발달재활서비스]

- 사업대상: 만18세 미만의 장애 아동(단, 만 6세 미만의 경우 시각·청각·언어·지적·자폐성·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)
- 추진근거: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
- 사업내용: 언어재활·청능재활·미술심리재활·음악재활·행동재활·놀이심리재활·재활심리·감각발달재활·운동발달재활·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
- 이용인원: 744명(2023년 7월 말 기준)
- 수행기관: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25개소

[주간활동서비스]

- 사업대상: 만 18세 이상 ~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취업 및 직업훈련 등 다른 공공 및 민간서비스 이용자 제외
- 추진근거: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
- 사업내용: 제공 유형은 기본형(132시간), 확장형(176시간) 등 2가지 유형으로 주간활동 이용
- 이용인원: 105명(2023년 7월 말 기준)
- 수행기관: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6개소

[방과후활동서비스]

- 사업대상: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(온종일교실,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,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등 다른 복지서비스 이용자는 제외이며,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시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가능)
- 추진근거: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
- 사업내용: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, 제공기관은 취미·여가, 자립준비, 관람·체험,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
- 이용인원: 75명(2023년 7월 말 기준)
- 수행기관: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3개소

□ 추진 상황

-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바우처 제공기관 34개소 운영 중
- 이용인원: 발달재활서비스 744명, 주간활동서비스 105명, 방과후활동서비스 75명

□ 추진 계획

- 분기별 예약금 입금 및 연 1회 이상 지도·점검